부동산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6. 6, pp. 85~97 http://dx.doi.org/10.19172/KREAA.22.2.7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Vol.22, No.2 2016. 6, pp. 85~97

<연구노트>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타난 표절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of Research Ethics for Researchers: Focused on Plagiarism of 『The Guideline for Securing of Research Eth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이 인 재 (Lee, Injae)*

I. 머리말

2015년 11월 3일 교육부 훈령 제153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에서는 개정 지침으로 칭함)이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이 개정 지침은 2005년 말에 발생한 황우석 사건(Hwang's Scandal)을 계기로 2007년 2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와 대학의 연구윤리 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활동 강화,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국가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자, 대학 및 학회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후속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과제가 생기게 되었다. 즉, 연구자들은 이 지침 개정의 배경, 핵심 개정 내용 및 그것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며,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종전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소속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따라야 할 책임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과 해서는 안 되는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또는 대학에서는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지침과 배치되거나 적어도 느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 개정 지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학이나 학회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개정이 있었지만,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자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보완이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 등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 온 지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윤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연구윤리에 눈감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고, 또 대학이나 학회에서도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몰랐다", "관행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재를 피해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연구윤리에

* 서울교육대학교, ijlee@snue.ac.kr

대한 무지가 연구자의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모르고서는 당당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가치나 행동 규칙(rule)은 무엇이며, 연구윤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에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 연구자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7가지 유형 중에서 표절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또는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평소 궁금해 한다고 생각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종전에 비해 2015년 11월 3일자로 개정 공표된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 보완 내지 추가되었다.[1)]

첫째, 개정 지침 제5조에서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연구 수행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일반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RCR)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데이터의 진실성 및 객관성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인간대상 연구(human subjects), 동물복지(animal welfare), 멘토링(mentor/trainee responsibilities)과 실험실 문화,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 responsible authorship), 동료평가(peer review), 공동연구(collaborative research),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데이터의 획득·관리·공유(data acquisition, management, sharing & ownership),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responsibility of scientists in society) 등 10가지가 있다.[2)] 개정 지침 제5조에 제시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은 연구윤리 교육에서 강조하는 이 10가지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5조의 1, 2는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자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그리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2013년부터 전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생명윤리법으로 칭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충분한 정보 제공에 의한 자발적 동의 획득(informed consent), 위험과 불편의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 계획이 과학적·윤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후 연구를 하여야만 한다.

② 제5조의 3, 5, 6은 "연구부정행위"와 "출판윤리"와 연결된다. 연구자는 데이터의 산출, 분석, 해석 과정에서 위조(fabrication)나 변조(falsifica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 결과 발표를 할 때에도 표절(plagiarism)을 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전 과정이 투명하고 진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성실하게 연구하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정당하게 인

1)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인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 Asian Journal of Beauty Cosmetology, 14(1), 2016, pp. 91-94를 참조.

2) 이인재는 연구윤리의 내용과 범위를 연구과정의 진실성과 객관성 유지, 연구결과 보고(발표)에서 지켜야 할 윤리, 실험실에서의 권위주의와 차별의 문제, 특이한 대상이나 방법을 포함한 연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 등 5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p. 50-56 참조.

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가치 또는 덕목은 존중, 성실, 정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4, 7, 8은 넓은 의미의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다. 이인재에 의하면,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발언하고 조언하는 것, 연구비의 합리적 집행,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생길 때 이를 알리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3]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개인 및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의 역할을 할 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연구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대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어, 이 연구비가 낭비되고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연구비 수주 및 집행 과정에서 높은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최근 옥시 사건을 통해 연구자의 양심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연구윤리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이란 연구의 타당성, 환자의 치료, 양질의 교육 등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일차적 이해(primary interest)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연구자 개인 및 그가 속한 집단의 재정적 이익이나 명예, 권력욕, 논문 출판, 친인척 선호 등 비재정적 이익 등 이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관련되는 이해상충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요청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④ 제5조의 9는 연구자 스스로가 자기 성찰과 연구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부주의, 편견, 태만, 자기기만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학문 간, 지역 및 국가 간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규범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연구자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자는 주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새로운 동향도 파악함은 물론 과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유혹 등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지녀야 한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도 같다.

둘째,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정의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유형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종전에 비해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여 모두 7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이전 지침이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념 정의만을 함으로써 제기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례가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보다 연구 현장의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였다.[4] 즉, 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이든 학회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결과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재조사의 경우, 이의신청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최근 대학이나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이에 대한 타당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인 바, 이 개정 지침의 내용을 왜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고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p. 33-35, p. 56.

4) 이인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 앞의 논문, p. 94.

III. 표절의 의미와 유형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표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의외로 표절이 어떨 때 성립하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표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개정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절의 의미와 유형 및 그 특성을 분석하고, 표절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개정 지침에 나타난 표절의 의미와 특성

개정 지침 제3장은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7가지가 속한다. 12조 1항의 3호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데, 이전 지침에 비해 개념 정의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고, 표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제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주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표절이 갖는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절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절의 한자어는 剽竊이다. 이는 '겁박할 표(剽)'와 훔칠 절(竊)이 합쳐진 것이다. 즉, 표절은 위협하고 훔치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바, 국어사전을 보면 표절을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5]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남의 글을 훔쳐 쓰는 도둑이라는 뜻을 가진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는 말이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 있는데, 이는 양반집에 들어간 도적이 '슬갑'이라는 하의를 훔쳤으나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 머리에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다.[6] 한마디로 슬갑도적이란 글 도둑과 무식함이라는 뜻이 합쳐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훔쳐 잘못 사용하여[7] 낭패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절의 영어 단어 plagiarism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는 것(passing off)을 말한다. 이 말은 '납치자'(kidnapper)를 뜻하는 라틴 단어 'Plagiari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어원은 '비뚤어진', '기만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plagios'에서 찾아볼 수 있다.[8] 한자어와 영어의 표절이라는 말 속에 담긴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아이디어나 글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훔치고 빼앗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속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타인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 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 절도(intellectual thievery)'로 간주되고 있다.[9]

개정 지침에 나타난 표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절은 한 연구자가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

5) 네이버 국어사전

6)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7) 임철순, "슬갑도적", 이투데이, 2015. 6. 24. 14면 오피니언.

8) Reader's Digest Great Encyclopedic Dictionary, 1031.

9)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 224.

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게 할 때 성립한다. 다시말하면, 일반적 지식이나 누구라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것은 표절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 중에는 자신이 쓴 글과 타인의 글을 비교하여 같거나 높은 유사성을 보이면 모두 다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타인이 쓴 것과 상당한 분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지식이거나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핵심 단어나 어구 또는 아무리 짧은 문장을 가져다 쓸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표현이거나 타인의 고유한 것이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출처표기를 반드시 해야 할 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 지식이나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출처표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통상 역사적 날짜나 사실 또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등은 일반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한다면 역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 지식이 특정 (학문)공동체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보자.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민족 구성, 언어, 종교, 주요 자원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불변의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재해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일상적인 도로 주변 풍경 사진이고, '타인의 특정한 관점이나 촬영 의도가 반영된 고유한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출처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나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면, 포털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상 상황, 사건 및 사고 등 사실(fact)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출처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사실 관계라도, 어떤 기자가 자신의 분석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그 기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표절은 나의 것과 남의 것이 양적으로 얼마만큼 같거나 유사해야 성립한다는 기준이 있는가? 이 물음도 연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절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표절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양적으로 얼마나 같거나 유사한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몰랐거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자신의 글에서 타인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저작물을 활용하였다면 이에 대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혀주면 표절이 아니다. 문제는 명백히 타인의 고유한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했을 때 표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그 업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서 활용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는 의도하지 않은 표절, 즉 우연한 표절(accidental plagiarism)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구와 타인의 연구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표절의 발생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

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인 것이다.[10)]

문제는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표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연구자가 표절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몰래 가져다가 쓰고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든 그리고 자신의 연구 내용과 타인의 연구내용을 혼동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에 대해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든 모두 표절에 해당됨을 유념해야 한다.

2. 표절과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타인의 저작물을 올바르지 않게 활용할 때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때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활용할 때 생기는 윤리적 개념인 반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법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표절과 대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협의의 의미를 가지며,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표절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유 지식(public domain)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범위에서도 성립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표절에 해당되지만, 아무리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연구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것 ② 타인의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③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을 것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저작물(텍스트, 표,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은 원칙적으로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허락을 얻는다는 것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허락을 받고 활용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 이용이란 ①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②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③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

다시말해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의 공표된 타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출판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물론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육, 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공정 이용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설사 인용된 부분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연구자들 중에는 표절이 자신의 저작물속에 인용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연구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생기기 때문에, 출처만 모두 밝히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비록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엄밀하게 표절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표절의 유형과 판단 근거

개정 지침에서 표절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제시한 4가지 유형은 국내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10)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 226, 252.

11) 위의 책, p. 255.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이 전형적이며,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번역한 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아이디어 표절이란 한마디로 타인의 독창적인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을 그것의 원저자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절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타인의 아이디어는 타인의 텍스트에 있는 문장이나 그림 및 표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타인 텍스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 논증 구조가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이를테면, 실험 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끼워 맞춘 것이라든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표현은 같지 않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경우,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면 대표적인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문장이나 그림 및 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독특한 생각이나 주장, 사고 구조나 논증 구조, 방법론 등을 활용할 때에는 비록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정리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표절 의혹을 받지 않는다.

둘째, 텍스트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단어, 어휘(구), 문장,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 흔히 텍스트라고 얘기되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했을 때를 말한다. 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표절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텍스트 표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텍스트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것으로 어떤 타인이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제시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표절은 직접적 표절(direct plagiarism, word-for-word plagiarism)이라고도 하는 데,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copying), 인용부호(quotation mark)로 표시하지 않고 또 그것의 원저자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만일 한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텍스트(중요한 단어나 구절, 문장, 표, 그림, 사진 등)를 필요해서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였으면, 그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텍스트 표절이 된다. 특히, 중요한 단어나 구절 및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으면(copy and paste), 즉 직접 인용을 하였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자신의 논지 전개나 결과 해석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 사진, 그림, 데이터를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만든 표, 사진, 그림, 데이터를 가져다 연구자가 사용하면서 연구자가 직접 산출한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셋째, 연구자가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씌여진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활용한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즉, 외국어로 기술된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의 내용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거나 번역한 내용을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하여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연구자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자들 중에는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자신이 번역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표절에 해당된다. 실제로, 국내의 한 교수가 미국인 교수가 영어로 쓴 논문의 2/3 가량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각주 등에 어떤 출처 표시도 하지 않았고, 참고문헌에도 활용한 논문의 서지사항을 밝히지 않아 표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연구자들 중에는 외국어로 된 타인의 텍스트를 활용하면서도 쉽게 표절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곤 한다. 그렇지만 이는 표절로 쉽게 적발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연구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비록 타인이 외국어 쓴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겼거나 이에 연구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가미되기는 했을지라도 그것이 연구자 자신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원저자가 따로 있다면, 이에

12) 위의 책, p. 245.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글쓰기 습관을 지녀야 한다.

학문 분야마다 연구의 특성도 다르고 어떤 것에 학술적 기여 및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은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문학이나 법학 분야의 학술 논문에서는 어떤 주장이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추론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표절 되었다. 표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하고자 할 때, 타인의 저작물에서 문자적으로 가져온 일련의 단어의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표절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거나 옳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수학 분야의 학술 논문의 경우, 독자가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연구물(standard literature)을 인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새로운 결과의 증거는 그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논문의 1/3 이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학이나 컴퓨터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의 실질적 가치는 개발된 장치나 알고리즘에 있지 왜 이러한 장치나 알고리즘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것에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표절은 표절에 대한 지식이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용법이나 출처표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accidental plagiarism), 의도하지 않았지만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가져다 자신의 것처럼 해서 발생하는 여러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표절 판단의 기준을 한마디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주의 깊게 살피는 표절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절하면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 ②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단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 ③ 타인의 것을 인용을 하면서 인용부호를 달지 않는 것 ④ 인용된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 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단어를 바꾸었지만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복사하는 것 ⑥ 출처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가져온 단어나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자신의 저작물에서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표절에 대한 정의가 모든 학문 분야의 표절 판단에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13]

표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면 표절 판단의 기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표절의 방법 중에는 ① copy and paste(타인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word for word로 복사하는 것), ② 아이디어 표절(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의견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③ 말바꿔쓰기(문장 구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바꾸거나 원문의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것, 또는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다시 진술하는 것), ④ artistic plagiarism(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나 비디오와 같은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 ⑤ code plagiarism(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코드,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는 것), ⑥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가져온 내용의 정확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⑦ misinformation of reference(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14] 이러한 표절 방법들은 표절을 판단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

Ⅳ. 표절 관련 쟁점들[15]

1. 표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표절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표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것을 훔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거나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표절 판단은 대부분 결과로부터 주장된 과정을 추론하여 한다. 즉, 표절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이 쓴 글과

13) Hermann Maurer, Frank Kappe, and Bilal Zaka, "Plagiarism-A Survey," *Journal of Universal Computer Science*, Vol. 12, No. 8, 2006, pp. 1050-1051.

14) 위의 글, 1051-1052.

15)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카피킬러 에듀(http://edu.copykiller.org)에 기고했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표절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갑)의 원본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그것이 을이 갑의 것을 본 후(의거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표절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갑의 아이디어나 진술을 훔쳐서, 을의 진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을이 갑의 것을 표절하지 않았다면 을의 진술이 갑의 것과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이 을에 대해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을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실은 갑의 원 소유물이었고 이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갑의 원 소유물이란 갑의 독창적이며 고유한 것, 즉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갑이 새로운 어귀를 만들어 내거나 특정한 글을 쓴다거나, 특정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거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갑 또는 타인의 이전 아이디어나 문장을 조합하여 새롭게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의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아이디어나 text가 독특하고 새로워야 하고 매우 독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통념)와 다를수록, 갑의 아이디어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일수록 갑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텍스트에 대해 지적 소유권을 좀 더 명확하고 신빙성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을이 갑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표절해 가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표절 의혹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다.[16]

그런데 흔히 표절로 의심을 받게 될 때, 대부분은 자신이 표절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표절을 판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절자가 불법으로 인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을이 갑의 저작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을의 글에서 참고한 갑의 것을 빼면, 을이 갑의 텍스트를 알았다는 증거는 표절을 판단하는 데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타인의 텍스트를 훔치는 전체 과정에 대한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표절 판정은 결과 즉, 표절 대상의 원저자와 표절자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갑의 텍스트가 독특하고 새롭다고 전제할 때, 을의 텍스트가 갑의 텍스트와 비슷할수록 표절일 가능성이 커진다. 통상 같은 주제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경우 매우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표절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표절 의혹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하라는 "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표절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유사성이 눈에 띄게 확실해야 한다. 비교되는 두 텍스트 상에서 진술이 똑같거나 아주 비슷하면 유사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복잡한 학술적 주제에서 거의 동일한 어구를 각각 내놓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어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표절의 확고한 증거가 된다.

아이디어 표절의 경우, 판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통상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을의 아이디어가 갑의 것과 비슷할수록, 갑과 을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과 다를수록 표절 혐의는 더욱 힘을 얻는다. 즉, 갑의 아이디어와 일반적 지식과 큰 차이가 있고, 을의 아이디어가 갑의 아이디어와 두드러지게 비슷하다면 표절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된다. 갑이 독특하고 상당히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에만 그리고 을의 아이디어가 갑과 아주 유사하다면 표절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표절의 경우, 갑의 지적 소유권의 명확성이 표절 판정에 큰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보통 표절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저자와 표절 의심자의 텍스트 사이의 유사성 판단에 근거한 추론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2단계 유사성 정도의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 즉, 갑의 진술이 일반적 지식 내지 통념과 확실히 다르고, 을이 가져다 쓴 진술이 독특한 구절, 아이디어, 또는 여러 아이디어가 결합된 주장이 갑의 것과 확실히 비슷하다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2. 타인의 글을 내 방식으로 말바꿔쓰기 (paraphrasing)나 요약(summarizing)을 했는데 왜 표절이 되는가?

연구자는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타인이 작성한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풀어쓸 수 있는데, 이를 paraphrasing, 즉 말바꿔쓰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바꿔쓰기는 한 텍스트나 문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의미는 유지하되, 다른 단어를 활용하여 다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일한

16) Kurt Weyland, "How to Assess Plagiarism of Idea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Apr. 2007, 40:2, Academic Research Library.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은 타인의 논문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연구자 자신의 표현으로 짧게 간추린 것을 말한다. 통상 말바꿔쓰기는 원문의 분량과 비슷하게 다시 진술하기 때문에 요약보다는 분량이 더 많다.

그런데 말바꿔쓰기와 요약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글을 가져다 활용하였지만, 연구자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는 원문의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의 몇 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이른바 '말바꿔쓰기 표절'에 해당된다.[17] 말바꿔쓰기 표절이란 타인이 쓴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원문의 핵심 아이디어나 논지가 남아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논지 전개의 필요에 맞춰 타인의 글을 말바꿔쓰기(핵심 단어나 글의 순서를 바꿈)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활용한 타인의 글 속에 있는 핵심 단어 몇 개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절로부터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않다. 또한 연구자가 말바꿔쓰기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한다.

3. 원문의 출처를 표시했는데도 재인용 표시가 꼭 필요한가?

표절은 출처표시가 꼭 필요할 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출처표시, 즉 인용한 부분에 대해 출처표시를 한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거나 통상 학계에서 통용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성립한다. 전자는, 이미 아이디어 표절과 텍스트의 표절에서 언급했듯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텍스트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할 때에 해당하며, 후자는 재인용 표시가 필요함에도 적절하게 하지 않아 생기는 2차문헌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2차문헌 표절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본 것처럼, 원문만을 출처표기한 것을 말한다. 이는 연구자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보통 외국어로 된 원문(1차 문헌)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타인이 인용한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원문에 대해서만 출처표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차문헌 표절은 연구자가 원문에 대해 출처를 표기할 때에도 표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는 특히 연구자가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리뷰할 때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어떤 원문에 대해 타인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직접인용하거나 간접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함)한 것을 연구자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copy and paste) 2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보고 연구자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타인이 원문에 대해 번역, 분석 및 해석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이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저자가 아무리 동일한 부분의 원문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글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나 순서로 쓰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2차문헌 표절을 확인할 때 두 사람이 일부분이든 상당부분이든 동일한 원문을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할 때 사용하는 주요 어휘나 글의 순서 및 논리의 흐름이 동일한지, 오역 부분이나 잘못된 어법이나 부호 등도 같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2차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여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문헌에 대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2차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즉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문헌의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17)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서울: 동문사, 2015), p. 248.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일 경우에는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2차문헌 표절은 연구자가 원문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원문을 소개하는 2차문헌 저자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지만, 2차문헌 저자의 해석이나 글쓰기가 마음에 들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할 때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을 보았고 실제로 원문을 찾아 확인하지 않았다면 2차문헌만을 출처 표기하거나 원문과 함께 2차문헌의 출처를 표기하면서 재인용이라고 하면 된다. 이는 연구자가 원문을 활용한 2차문헌 저자의 해석이나 글쓰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구자가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해당되는 원문을 직접 찾아 인용의 가치 또는 필요성을 느껴 자신의 방식으로 인용하였다면 이 원문에 대해서만 출처표시를 하는 것도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인용 표기를 누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원문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자신의 인용의 목적이나 방식에 맞춰 인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원문에 대하여 2차문헌 저자가 직접 번역하였거나 독창적인 해석이나 관점을 가미한 것을 연구자가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문과 2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포괄적, 개괄적이지만 출처표시를 했다면 표절이 아니지 않는가?

포괄적·개괄적인 출처표시란 인용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저작물의 머리말이나 장, 절의 제목 부분 등에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인용을 하면서도 인용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고 머리말이나 본문의 목차 등에서 타인의 것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두루뭉술하게 밝히는 경우를 말한다.[18]

포괄적·개괄적인 출처표시는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머리말이나 논문의 첫 부분에서 언급을 함으로써 진정한 원저작자를 숨긴 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본문에서 활용한 부분마다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충실한 출처표시라고 보기 힘들다. 이 경우, 특히 직접인용하고 있는 경우,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연구자 자신의 것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떤 독창적이고도 중요한 개념이나 연구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남형두 교수는 학술적 저술의 본문에서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문에다 특정 저술에 의존했다고 개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이는 인용의 목적과 출처표시 기능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출처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9]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의 '예술철학 사건 판결(2004)'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문에서 각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대신, 머리말에서 피인용저서를 참고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 그대로 단순히 참고만 하여 자신의 저서를 저술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표절 인정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은 인용 목적을 제대로 파악한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학은(學恩)형 출처표시"라고 비판적 의미로 명명하면서 이러한 출처표시 방식의 정도가 심해지면 "000 스승의 학은(學恩)에 힘입은 바 크다"와 같이 책의 서문에 피인용저서의 저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출처표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

학술 논문이나 저서를 쓸 때 인용한 타인의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표기를 정확히 함으로써 타인의 것과 연구자 자신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글쓰기임을 고려할 때, 타인의 고유한 표현이나 글쓰기 방식을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케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적·개괄적인 출처표시 보다는 활용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표절인가?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18) 위의 책, p. 247.

19) 남형두, 『표절론』(서울: 현암사, 2015), p. 320.

20) 위의 책, pp. 321-324.

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인용한 저작물의 저자, 자료명,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 ② 존재하지 않은 출처(sources)를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것 ③ 출처표시 된 어떤 자료나 주장에 대해 왜곡되게 해석 내지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얻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의존한 원저자의 업적에 대하여 인정(credit)하고 존중함을 드러내고, 둘째,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해 줄 뿐만 아니라 셋째,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인용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넷째, 관련 연구를 위한 풍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한다. 이러한 출처표시의 여러 이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실수든 의도했든 연구자와 원저자의 것을 혼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동료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연구자가 선입견, 편견, 무지, 연구의 게으름 등으로 인하여 관련 데이터나 타인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그것이 후속 연구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막대하다. 더구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 달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 축소, 과장, 생략하는 경우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출처표시가 갖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대학에서는 표절의 한 유형으로써 '정확하지 않는 출처표시(giving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that is cited/misinformation of references)'를 포함시키고 있다.

6.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어느 부분을 '참조'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 즉 copy and paste한 경우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는 올바른 인용이 아니므로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즉, 연구자가 '참조', '요약', '재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이 쓴 표현이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신의 용어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참조, 요약, 재구성 등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말바꿔쓰기(paraphrasing)나 요약(summarizing)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즉, 직접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참조나 재구성, 즉 간접인용 했다고 허위를 말함으로써 참조나 재구성했다고 하는 부분이 원저자의 것이 아닌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케 하도록 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짧게든 길게든 타인의 것을 직접인용한 것이라면 참조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인용부호(" ")나 인용단락 표시(3줄 또는 3문장 이상의 길게 인용되는 내용을 본문과 구분하기 위해 줄을 바꾼 후,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크기나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연구자가의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것임을 밝혀야 한다. 직접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직접인용된 표현은 원저자의 것이라면,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용하는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므로 간접인용된 표현은 연구자의 것이다. 만일 한 문장이나 문단에서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에는 간접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인용된 부분에 대해 인용부호(" ")를 표시하면 된다.

V. 맺는말

지금까지 필자는 개정 지침에 나타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표절의 의미와 유형 및 판단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윤리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국내의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주제를 뽑으라 하면 표절, 중복게재, 저자표시(authorship)와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는 표절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분석한 이유는 지면 상의 제약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표절에 대해 의외로 오해하고 있거나 궁금해 하는 것이 많다는 필자 나름의 인식에

서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황우석 사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윤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학 및 학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면서 만난 연구자들이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변, 상담, 자문 등에서 형성된 것이다. 최근 표절 논란 중에는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아닌 상대 연구자들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 학문의 발전이나 연구윤리의 확립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절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텍스트를 원저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할 때 성립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이 출판된 것이든(때때로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든) 출판되지 않은 것이든(연구 계획서, 데이터 수집의 형식, 구두로 말해진 것을 사용하는 것 등) 모두 해당된다. 즉,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타인의 원본(originality)을 타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일 때 발생한다. 표절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표절이 성립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활용한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가져다 활용할 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면, 표절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처를 정확히 밝힘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시켜주고, 후속 연구를 위한 출처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 표절을 판단할 때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 수 또는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양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나 타인의 독창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자신의 것처럼 하는 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다른 사람이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 즉 명백하고도 기본적인 출판윤리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절은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사기” 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부정행위”라고 간주되고 있다.

연구의 경쟁력이 개인 및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라면 최소한 지켜야할 도리와 규칙이 있음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귀찮거나 연구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구속물로 간주하여 멀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당당하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연구활동의 GPS”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 친구처럼 가까이 하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